

GANGJIN 

Web Contents




목차

목차	2
사전정보공표 - 상하수도사업소	3
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부과 안내	3
첨부파일(1)	3

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부과 안내

작성일 2018.08.21 11:47 등록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93

첨부파일(1)  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.hwp 125 hit/18.0 KB [다운로드](#) [미리보기](#)

강진군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거

1. "원인자부담금"이란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수도공사에 관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

가.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.

나.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.

2. "손괴자부담금"이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목록

GANGJIN

Web Contents

